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경제과)

의안번호	제 13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08. 17.)
의 안 명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2021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2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 2)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 3) 설치연도 : 199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담보-업체당 1억원 이내, 신용-업체당 5천만원 이내

다.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 사유

- 2021년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2021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증가

2)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마)= (가)+ (나)
	계 (나)= (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3,553,507	430,394	3,855,554	3,425,160	3,983,901

-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 예산	변경 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3,407,722	5,279,827	1,872,105

- 2022년 기정예산 3,407,722천 원에서 5,279,827천 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316,972천 원에서 2,189,077천 원으로 증액 편성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407,722	5,279,827	(증) 1,872,105	
일반회계전입금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	11,483	11,483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84,443	1,284,443	-	
예치금회수	2,111,796	3,983,901	(증) 1,872,105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407,722	5,279,827	(증) 1,872,105	
출연금	750,000	750,000	-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338,000	338,000	-	
일반운영비	2,750	2,750	-	
민간융자금	2,000,000	2,000,000	-	
예치금	316,972	2,189,077	(증) 1,872,105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4)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천원)

조성액	사용액	2022년말 조성액 (잔액)
5,279,827	3,090,750	2,189,077
· 이자수입 : 11,483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1,284,443 · 예치금회수 : 3,983,901	- · 출연금 : 750,000 · 이차보전 : 338,000 · 민간융자금 : 2,000,000 · 일반운영비 : 2,750	= · 2023년도로 이월(예치금)

3.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정예산 34억772만원보다 54.94%인 18억7,210만원이 증액된 52억7,982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²⁾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자 및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라 18억7,210만원의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2022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34억772만원에서 18억7,210만원 증액된 52억7,98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20.12.31.)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
2.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 ·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5.5.14.)
4. 기금의 운용 · 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5.5.14, 2020.12.31.)